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6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 김소희·최수진·김기현

김선교 · 김위상 · 이헌승

우재준 • 곽규택 • 김성원

주호영 · 김상훈 · 성일종

박성훈 • 장동혁 • 최은석

김용태 • 서천호 • 김대식

강대식 · 조지연 · 김장겸

이달희 · 서범수 · 한지아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,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.

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

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제1호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76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호 중 "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6조제6항제2호 중 "제26조제1항"을 "제26조제1항 및 「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8제1항"으로 한다. 제15조제4항 중 "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산 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노동위원회의 소관 사	제2조의2(노동위원회의 소관 사
무)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	무)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	1
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	
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	
법률」, 「교원의 노동조합	
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	
률」, 「공무원의 노동조합	
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	
률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	
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	
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	
법률」, 「산업현장 일학습병	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
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	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용상
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	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	촉진에 관한 법률」
따른 판정・결정・의결・승인	
•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	
정 등에 관한 업무	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노동위원회의 구성 등) ①	제6조(노동위원회의 구성 등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
-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.
- 1. (생략)
- 2.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(「남 년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 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

- 3. (생략)
- ⑦ (생략)
- 제15조(회의의 구성 등) ① ~ ③ 제1 (생 략) (생 략)

6
 1. (현행과 같음) 2
<u>제26조제1</u> 최 미 「크 0 N 성격 1 범 그 기
항 및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
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
<u>률」 제4조의8제1항</u>
3. (현행과 같음)
⑦ (현행과 같음)
15조(회의의 구성 등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4)
<u></u> 「산업현장 일
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